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21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쪽방주민 재정착을 위해 1인가구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방촌 공공 주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장·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사항을 정비 하고, 대전 쪽방촌 사업의 현물보상 대상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현물 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물보상대상 토지면적 기준 조정(안 제20조의8)
- 1) 대전 쪽방촌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현물 보상 대상 토지면적 기준을 조정하여 현물보상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안 제34조의4)
 - 1)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어린이집 설치를 면제하고,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대체 근거 마련

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4)

1) 쪽방촌 사업 특성등을 고려, 전용면적 30㎡ 미만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이메일(parklisp@korea.kr 및 jek0401@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총괄과 (전화 044-201-4382, 044-201-4383, 팩스 044-201-5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